

2025년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-9) 참여자 모집 공고

기술창업비자(D-8-4) 및 기술창업준비비자(D-10-2) 취득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‘2025년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-9)’에 참여할 외국인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10월 21일

창업진흥원장

※ 본 공고는 공고일 기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참여 및 수료가 가능하며, “OASIS9(초기 사업화 지원)”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(기타 OASIS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음)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혁신적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외국인 (예비)창업자 대상 초기 사업화 지원 및 한국 시장 정착 지원
- ☐ **지원대상** : 국내에서 법인설립 및 창업 활동을 목표로 기술창업비자(D-8-4) 및 기술창업준비비자(D-10-2)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
- ☐ **지원내용** : 사업화자금(10백만원 내외)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

< 프로그램 주요내용 >

사업화 자금 지원	엑셀러레이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
▪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▪ 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 운영

- ☐ **운영기간** : '25년 11월 ~ '26년 2월(4개월 내외)
- ☐ **지원규모** : 20명 이내

2

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'D-10-2 또는 D-8-4 창업비자'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(예비)창업자

* D-8-4 또는 D-8-4S 창업 비자 보유 창업자는 신청 불가

**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
3

지원내용

□ 지원기간 : '25년 11월 ~ '26년 2월(4개월 내외)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(사업화 자금 지원) 출입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재권 취득, 사업 모델(BM) 개선,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**1천만원 내외 지원**
- (지원 프로그램) 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, 시장조사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
- (창업비자 점수 취득)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에 한해 이수증 발급 (**창업비자점수제 30점에 해당**)

< 프로그램 운영(안) >

구 분	OASIS-9 사업화프로그램
운영방식	▪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
운영내용	▪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▪ 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 운영
취득점수	▪ 30점
수료기준	▪ 사업화지원금 집행 80% 이상 ▪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실 참여

4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

- 평가는 ①요건검토 → ②서면평가 순으로 진행하며, 단계별 평가 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

① **(요건검토)**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

② **(서면평가)**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자를 선정(후보기업 5개사 내외 지정)

- 필요시 선정후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별도 진행할 수 있음

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전문기관(창업진흥원)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,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,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, 대표자(신청자)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*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·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
실현가능성	·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
국내 적합성	· 국내 시장 수요 적합성, 현지화 가능성,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
성장전략	·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· 대표자 및 고용 (예정)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

□ 최종선정

- **(최종선정)**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

5

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기간** : '25. 10. 21(화) ~ '25. 11. 6(목), **18:00**

< 유의사항 >

- ① 마감일 2~3일 이전에 사업 신청 웹사이트(<http://startup-korea.com>)에 미리 접속하는 것을 권장
* 신청-접수 마감일 18:00에 접수가 마감되며, 마감시간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- ②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
□ **신청방법** : GSC 홈페이지(startup-korea.com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□ **제출서류** : 참여신청서(국문 또는 영문) 및 증빙서류 일체

< 제출서류 >

제출서류	구분	제출방식
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영문)	필수	온라인 접수 (GSC 홈페이지)
②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	필수	
③ 체류비자 증빙	필수	
④ 사업자등록증	해당 시	
⑤ 기타 필수서류 등(증빙서류) ※ 타 OASIS 프로그램 이수증, 혹은 참여확인서	해당 시	

6

유의사항

□ **신청 시 유의사항**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**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

- 국내(한국) 기술창업 관련 활동 목적의 참여자가 아닌 단순 체류 연장 목적의 경우,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·참여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, 참여가 취소될 수 있음
- 참여자는 동 공고문, 법무부, 전문기관(창업진흥원)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프로그램 참여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 운영 매뉴얼 및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프로그램 참여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프로그램 참여자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참여자 중 체류 실태가 건실하지 못하거나, 향후 창업비자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배제 가능
- 참여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예비창업자인 경우,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내 한국 내 법인 설립 완료하여야하며, 불가피할 경우 창업 노력, 진행상황 등 별도 소명 필요

7

기타사항

□ 문의처

- (사업 신청 문의) 창업진흥원 글로벌진출팀 인바운드파트
 - 이메일 ☒ : inbound@kised.or.kr

참고 1

비자 발급 요건

□ 기술창업비자(D-8-4) 요건

- ①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②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*를 취득한 사람 또는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

*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

-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여야 하며, 필수 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

<창업비자 점수제 >

필수항목 및 점수(180점) *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									
구분	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		지식재산권 출원		보유(등록)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		연구(E3) 자격으로 3년체류	OASIS-6, 9	ACVC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사람
	특허 또는 실용신안	디자인	특허 또는 실용신안	디자인	특허 또는 실용신안	디자인			
배점	60	30	30	10	10	5	30	각 30	60
선택항목 및 점수(120점)									
구분	OASIS-1, OASIS-2[4], OASIS-4		OASIS-5, OASIS-7, OASIS-8		학 력		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		
					토픽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	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			
배점	각 10		각 15		20	10	10		

- 대한민국 법인*을 설립**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

*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‘필수항목’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함

**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,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

-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, 법인 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(체류기간 6개월 부여,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연장)

-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, 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, 출원, 공동발명 및 OASIS-6, 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(등록), 출원, 발명 및 참여(선정)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하고,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 (예: 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)

□ 기술창업준비비자(D-10-2) 요건

-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 -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, 중기부 K-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,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요건 미적용
 -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(OASIS)중 하나 이상 해당자(참여중인 경우 포함)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의 '필수항목' 중 1개 이상 해당자
- 체류기간 연장 : 최대 1년, 단, 지식재산권*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
 - * 지식재산권중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만 해당

참고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
사업화 자금	·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1천만원 내외 지원 - 최종 지원규모에 따라, 차등지원할 수 있음 ·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100% (자기부담사업비 없음)	
	<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>	
	비 목	비목 정의
	재료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
	외주용역비	· 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	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	·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	인건비	·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신청자(창업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
	지급수수료	·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
	여비	· 신청자(창업자)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· 신청자(창업자)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
광고선전비	· 신청자(창업자)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
창업활동비	· 창업(준비)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(월 50만원 한도 내)	
창업 프로그램	유형	프로그램 예시
	행정지원	· 창업비자 취득 상담, 법인설립 연계(법무법인), 거주 상담 지원 사업비 사용 교육
	네트워킹	· 사무공간 입주 지원, 네트워크 이벤트 참가, GSC 커뮤니티 연계
	비즈매칭	· 국내 파트너 연결, 공동 프로젝트, 투자자(vc) 매칭
	성장지원	· 전문가 멘토링, 정부사업신청 지원, 지식재산권 출원,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